

스쿨넷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정 2005. 9. 15

개정 2006. 5. 18

개정 2011. 2. 21

개정 2019. 8. 2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스쿨넷서비스를 운영하는 각 기관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종합적으로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스쿨넷서비스 협의회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스쿨넷서비스”란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(이하 “각급학교”라 한다)와 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 등 각 교육기관이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.
2. “스쿨넷서비스 제공사업”이란 각급학교와 각 교육기관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“이용기관”이란 스쿨넷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전담기관”이란 스쿨넷서비스 제공사업 및 스쿨넷서비스 운영·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2장 설치 및 기구

제3조(설치) 스쿨넷서비스 전담기관 및 이용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을 통해 서비스 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쿨넷서비스 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4조(기구)

- ① **협의회는 총회, 정책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구성한다.**
- ② 협의회는 스쿨넷서비스 운영·관리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둔다.

제3장 스쿨넷서비스 이용기관

제5조(이용기관)

- ① 스쿨넷서비스의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스쿨넷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으로 한다.
 1. 유아교육법, 초·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
 2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·도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 등 교육기관
- ②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이용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6조(이용기관의 의무 등)

- ① 시도교육청(또는 교육연구정보원)은 협의회의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를 가진다.
- ②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.
 1. 스쿨넷서비스의 이용
 2. 협의회에 회의 안건 제청
 3. 협의회가 주관하는 총회 및 세미나 참여
 4. 협의회가 주관하는 교육 및 기술지원 참여
 5. 협의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 열람
 6. 그 밖에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권리
- ③ 이용기관이 갖는 그 밖의 권리는 필요시 스쿨넷서비스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.

제4장 총회 및 정책조정위원회

제7조(총회)

- ① 총회는 스쿨넷서비스 이용기관으로 구성하며,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한다.
 1.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
 2. 스쿨넷서비스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정책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정책조정위원회)

- ① 정책조정위원회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1. 사업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
 2. 신규 서비스의 도입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
 3. 협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4. 협의회 운영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
 5. 협의회 예산운영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
 6. 협의회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
 7.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정책조정위원회 구성)

- ① 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1. 교육부, 전담기관에서 스쿨넷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 2. 스쿨넷서비스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도교육청 스쿨넷서비스 담당 부서의 장
- ②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스쿨넷서비스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정책조정위원장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책조정위원 중 호선하여 선임한다.

제10조(정책조정위원장의 임기)

- ① 정책조정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.)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,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이 퇴임 또는 다른 직위로의 전보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었던 기관의 후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승계하되,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1조(정책조정위원장의 직무)

- ① 정책조정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.)은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12조(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)

- ① 정책조정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1. 정책조정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.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2. 정책조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
- ② 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갖는다.
-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책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5장 전문위원회

제13조(전문위원회) 전문위원회는 정책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조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협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안건의 사전 협의
2. 협의회의 운영규정 및 회비 등의 변경에 관한 안건의 사전 협의
3.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안건의 사전 협의
4.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따른 세부 사항의 협의 및 의결

제14조(전문위원회의 구성)

-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조정위원회 소속기관의 직원 1명으로 구성하되, 사무관급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기관별로 스쿨넷서비스 관련 업무담당 실무자 1명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.
-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속한 기관의 전문위원을 지명한다.

제15조(전문위원회의 운영)

- ① 전문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1.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
 2.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3. 전문위원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한 전문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이 경우 기관 당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, 위원장도 의결권을 갖는다.
-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전문위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그 전문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제6장 전담기관

제16조(전담기관)

- ① 스쿨넷서비스의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둔다.
-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스쿨넷서비스 제공 사업의 년도별 계획 수립 및 이행, 수행결과 보고
 2. 스쿨넷서비스 제공 관련 기획 업무
 3. 스쿨넷서비스 사업자의 공모, 선정, 협약 및 관리
 4. 스쿨넷서비스 이용관리시스템(홈페이지, 콜센터, 전문기술지원센터, 통합관리시스템) 구축 및 관리
 5. 스쿨넷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서비스 운영
 6. 스쿨넷서비스 관련 규정, 제도 마련 및 개선
 7. 스쿨넷서비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
 8. 스쿨넷서비스 이용기관 확충 및 가입신청 접수·관리
 9. 기타 스쿨넷서비스 제공 및 운영 관련 이용기관(교육청) 요구사항 지원
 10. 스쿨넷서비스 협의회 운영 및 주요안건 보고

제7장 운영비

제17조(운영비)

- ① 협의회의 운영비 마련을 위한 예산은 스쿨넷서비스에 참여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.
- ② 관련 예산의 시도교육청의 부담 비율은 매년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- ③ 전담기관의 제반 운영비용은 협의회 운영비로 총당한다.

제18조(예산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결과의 보고 및 승인)

- ① 협의회 예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② 전담기관은 차기연도 예산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 5개월 이내 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전담기관은 전년도 예산집행결과를 회계마감 후 2개월 이내까지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 이 규정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전담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